

진 주 문 산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11



국토교통부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1.1.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개요

1) 계 획 명 :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2) 범 위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 규 모 : 1,407,912m²
- 계획인구 : 15,000인(6,000세대)
- 사업기간 : 2024년 ~ 2030년

3) 계획수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5) 협의기관 : 환경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작성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에 따라 평가준비서 작성시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으로 봄

다.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면적 : 1,407,912㎡)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지구	공공주택지구지정 : 1,407,912㎡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향후 본 계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면적 : 1,407,912㎡)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47조제2항[별표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47조제2항 관련[별표 3]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개발기본계획(면적 : 1,407,912㎡)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또한 향후 본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향후 본 계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면적 : 1,407,912㎡)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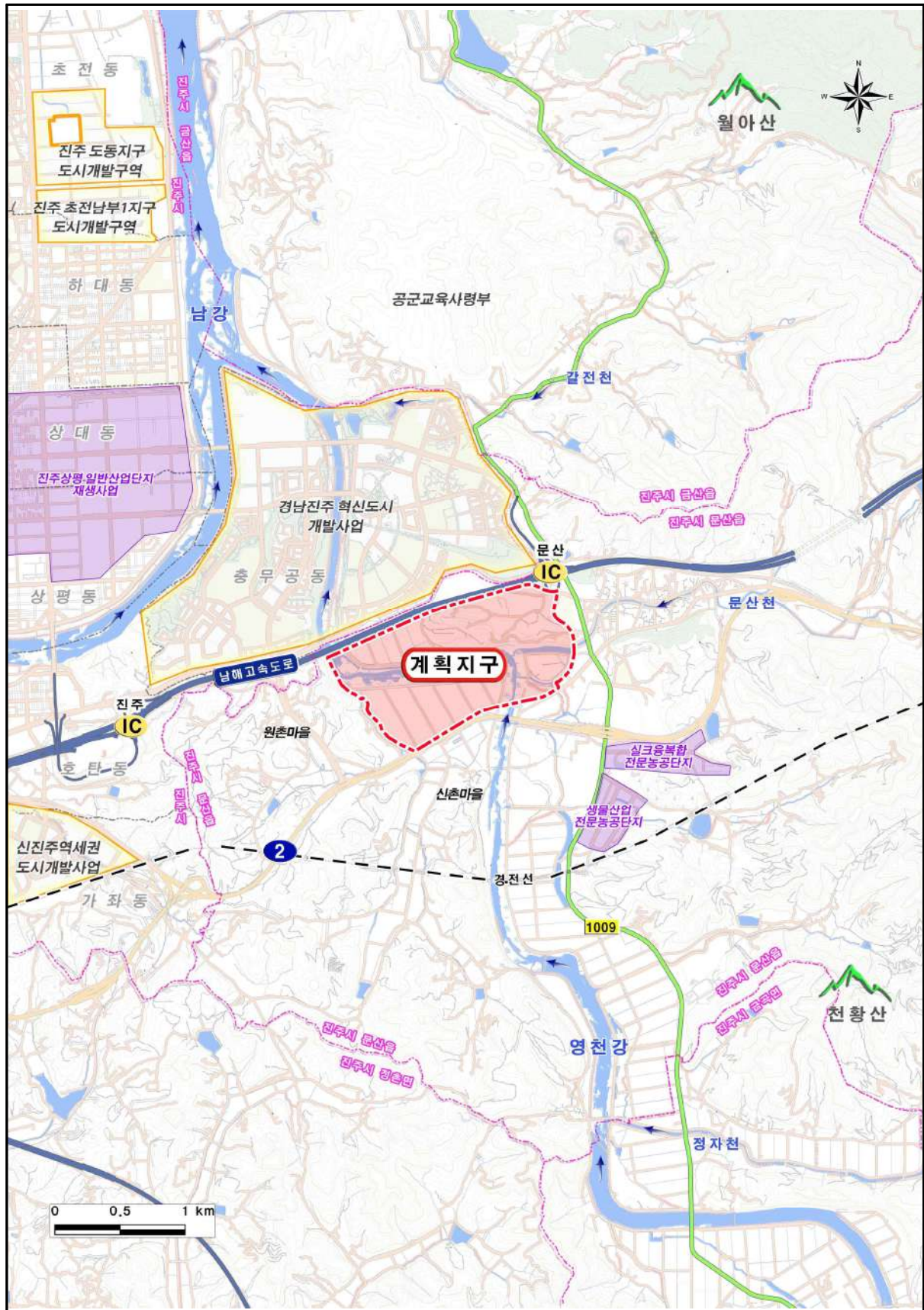
〈표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별표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0. : 평가준비서 제출
- 2023. 11.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3. 11.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3.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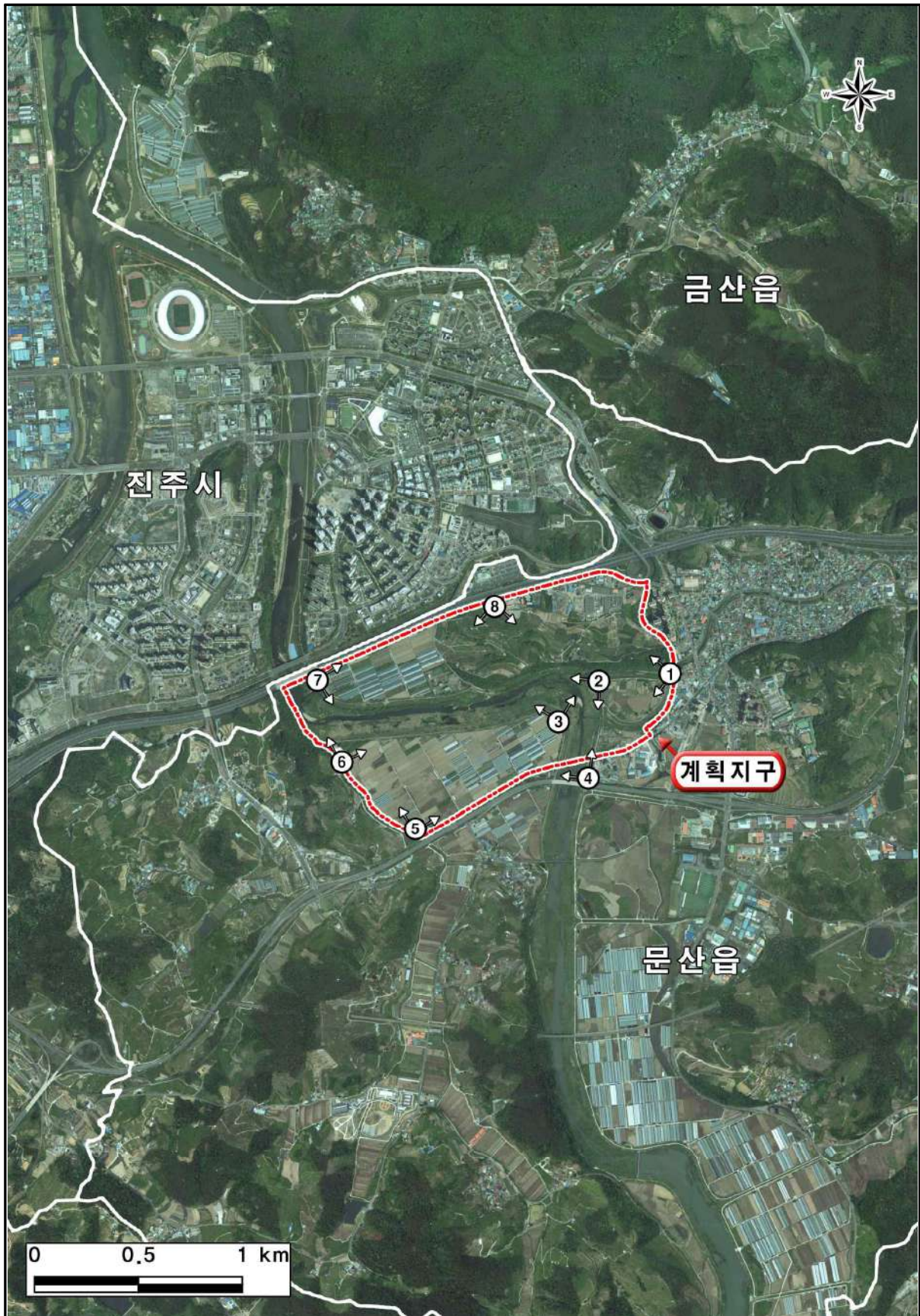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구분	사유	구분	사유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미포함	⑤	지구계 정형화
②	도시계획시설(광장) 경계/미포함	⑥	하천구역(영천강) 경계/포함
③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경계/미포함	⑦	하천구역(옥산천) 경계/미포함
④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경계/미포함	-	-

(그림 1-2) 지구계 결정사유도



(그림 1-3) 계획지구 위성사진



(그림 1-4) 계획지구 현황사진

바. 계획의 주요내용

1) 토지이용 구상(안)

- 경남진주혁신도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망 체계 및 보행녹지축 등을 연결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영천강, 문산천 주변 친수공간을 활용한 수변마을 특화주거 및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통하여 세대·문화 어울림 도시 조성
-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남해고속도로 문산IC 인근에 도시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 등 배치하여 일자리 확보 및 자족성 강화



(그림 1-3) 토지이용구상(안)

주) 본 절차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단계이며, 상기 자료는 토지이용구상(안)으로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검토·제시할 계획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결정사항 : 평가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자 : 2023년 11월 2일(목)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23-72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 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대부분 농경지(전, 답)로 이용 중이며, 하천이 지구를 통과하며, 하천변으로 일부 산림이 분포함 - 주변지역으로 남해고속도로(문산IC), 국도2호선 등 광역교통시설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 식물상 및 식생, 육수생물, 양서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흠쌓기 및 흠갈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 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입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수환경의 보전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등에 따른 영향 예상 수계(영천강, 문산천) ○ 운영 시 발생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따른 영향 예상 수계(영천강, 문산천)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영천강, 문산천)	○ 공사 시 ○ 운영 시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 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공사 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경남진주혁신도시 및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 시 에너지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악 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발생원에 대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등의 악취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토 양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 시
			소 음 · 진 동	○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 시 주변 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량 운행에 따른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일 조 장 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 운영 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 운영 시
	사회 ·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운영 시
		인구 및 주거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나.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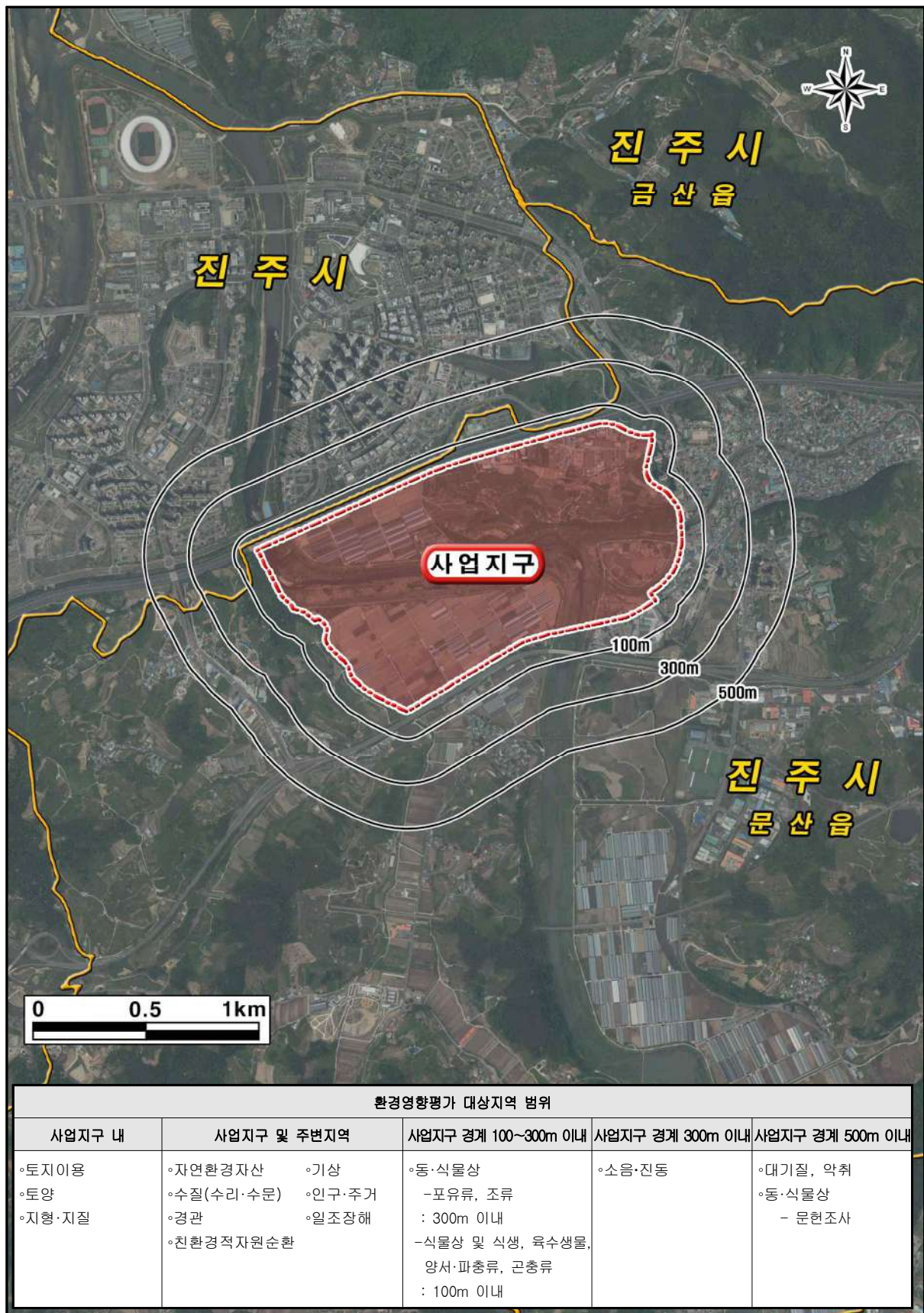
- 본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표 2-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대부분 농경지(전, 답)로 이용중이며, 하천이 지구를 통과하며, 하천변으로 일부 산림이 분포함 - 주변지역으로 남해고속도로(문산IC), 국도2호선 등 광역교통시설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함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 식물상 및 식생, 육수 생물, 양서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계획 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자연환경자 산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 변화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 운영 시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 기 질	○ 공사 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경남진주혁신도시등 기존 주거지 등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 시 에너지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악 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발생원에 대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의 악취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표 2-2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수 환 경	수 질 (수리·수문 포함)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영천강, 문산천) ○운영 시 발생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따른 영향 예상 수계(영천강, 문산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영천강, 문산천)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수립 ○운영 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 시 홍수유출량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영천강, 문산천)	○공사 시 ○운영 시
	토 지 환 경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토지이용 적정성	○사업지구	○공사 시 ○운영 시
	토 양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사업지구	○공사 시
	지형·지질	○흙쌓기 및 흙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강우 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사업지구	○공사 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투입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소음·진동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운영 시 주변 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공사 시 ○운영 시
	경 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발생(토지이용변화 및 건축물 입지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일조장해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의미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23. 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별표 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함
- 본 계획은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을 수립할 경우 (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 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2-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선정방법	선정	비고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토지이용구상안 비교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대상지역 비교 (계획지구 경계)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나. 대안의 비교·분석

1) 계획 비교(Action, 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검토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4〉 계획 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 수립(Action)	개발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지구 인근 광역교통시설(남해고속도로, 국도 2호선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계획지구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 공공 주택지구 조성	○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및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통 및 인접 생활 중심지와 연계된 주변 개발 압력이 높아 장기적으로 개별적인 개발 증가 예상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 문화재보호구역이 계획지구 내 일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기관과 협의 필요	○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종 서식지 및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나, 계획지구 내 하천(영천강, 문산천) 주변으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계획지구는 농경지(전, 답)가 대부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나, 개발 압력에 의한 산발적 개발 시 영향이 예상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의 대부분은 표고 및 경사차가 크지 않은 평탄 지형이며,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지형변화 예상	○ 계획지구는 평탄지와 일부 구릉성 산지 부가 혼재하여 위치하며, 현재 대부분 농경지(전, 답) 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 등에 일부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정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 시행	○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등으로 이용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선정	●	-

2) 수요·공급(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른 대안별 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5〉 수요·공급 대안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이용구상(안)																																																		
토지이용계획(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면적(m²)</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총계</td><td>1,407,912</td><td>100.0</td></tr> <tr> <td>주거시설</td><td>480,000</td><td>34.1</td></tr> <tr> <td>도시지원시설</td><td>100,000</td><td>7.1</td></tr> <tr> <td>공공시설</td><td>827,912</td><td>58.8</td></tr> <tr> <td> 공원 및 녹지</td><td>520,000</td><td>36.9</td></tr> <tr> <td> 교육시설</td><td>45,000</td><td>3.2</td></tr> <tr> <td> 기타시설</td><td>262,912</td><td>18.7</td></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비율(%)	총계	1,407,912	100.0	주거시설	480,000	34.1	도시지원시설	100,000	7.1	공공시설	827,912	58.8	공원 및 녹지	520,000	36.9	교육시설	45,000	3.2	기타시설	262,912	18.7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면적(m²)</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총계</td><td>1,407,912</td><td>100.0</td></tr> <tr> <td>주거시설</td><td>560,000</td><td>39.8</td></tr> <tr> <td>도시지원시설</td><td>130,000</td><td>9.2</td></tr> <tr> <td>공공시설</td><td>717,912</td><td>51.0</td></tr> <tr> <td> 공원 및 녹지</td><td>440,000</td><td>31.3</td></tr> <tr> <td> 교육시설</td><td>45,000</td><td>3.2</td></tr> <tr> <td> 기타시설</td><td>232,912</td><td>16.5</td></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비율(%)	총계	1,407,912	100.0	주거시설	560,000	39.8	도시지원시설	130,000	9.2	공공시설	717,912	51.0	공원 및 녹지	440,000	31.3	교육시설	45,000	3.2	기타시설	232,912	16.5
구분	면적(m ²)	비율(%)																																																
총계	1,407,912	100.0																																																
주거시설	480,000	34.1																																																
도시지원시설	100,000	7.1																																																
공공시설	827,912	58.8																																																
공원 및 녹지	520,000	36.9																																																
교육시설	45,000	3.2																																																
기타시설	262,912	18.7																																																
구분	면적(m ²)	비율(%)																																																
총계	1,407,912	100.0																																																
주거시설	560,000	39.8																																																
도시지원시설	130,000	9.2																																																
공공시설	717,912	51.0																																																
공원 및 녹지	440,000	31.3																																																
교육시설	45,000	3.2																																																
기타시설	232,912	16.5																																																
장점	○ 계획지구 북측의 경남진주혁신도시와 도로 연결을 통한 기능 간 연계 가능 ○ 도시지원시설(상업시설, 업무시설) 집적화로 인해 생활 편의 기능 효율 극대화 ○ 문산IC 인근에 도시지원시설(자족시설), 완충녹지 배치로 소음영향 저감 ○ 수변축(영천강, 문산천)을 중심으로 수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태네트워크 연결	○ 교량 3개소 설치를 통한 지구 간 원활한 교통흐름 기대 ○ 주거용지 확보 최대화로 주택공급 기여 ○ 높은 비중의 도시지원시설 확보로 고용창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단점	○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도로 1개소로 교통량 증가시 교통흐름 정체 우려 ○ 공원·녹지 면적 증가로 가처분용지 감소 ○ 계획지구 내 하천 횡단으로 남측지역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접근성 부족	○ 경남진주혁신도시와 직접 연결된 도로 부재로 지역간 연계기능 저하 ○ 도시지원시설(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산 배치로 생활 편의 기능 효율 저하 ○ 교량 3개소 설치를 통한 지구 간 원활한 교통흐름 기대되나, 다수의 교량신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 문산IC 인근에 주거시설 입지로 도로교통 소음 영향으로 생활환경 악화 예상 ○ 수변(영천강, 문산천) 녹지공간 부족으로 생태네트워크 단절 및 쾌적성 저하																																																
선정	●	-																																																

3)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지구계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지구 경계		
면적	○ 1,407,912m ²	○ 1,795,689m ²
장점	○ 계획지구 북측 남해고속도로와 남측 동부로, 서측의 소하천(옥산천) 경계를 고려한 정형화 ○ 대상지 경계와 소하천(옥산천) 경계 일치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가 ○ 산지부 포함 최소화로 산림 훼손 최소화 ○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 및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가능	○ 계획지구 북측 남해고속도로와 남측 도로(동부로), 서측 도로(영천강로, 동부로) 경계를 고려한 정형화 ○ 북측 경남진주혁신도시와 연계도로 인접으로 대상지로의 접근성 우수 ○ 대안1에 비해 개발 가용 부지 추가 확보 가능
단점	○ 대안2에 비해 개발 가용 부지 감소 ○ 북측 경남진주혁신도시와 연계도로 부재로 대상지로의 접근 불리 ○ 서측 소하천(옥산천)과 접하여 도로 접근성 불리	○ 산지부 포함으로 지형 및 산림(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훼손 증가 ○ 서측 산지지형으로 인해 경사면 증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움 ○ 서측 주거지, 상가 등 지장물 편입 증가 ○ 서측 도로(영천강로, 동부로) 인접으로 도로교통소음 가중
선정	●	-

4) 대안의 평가 및 선정

- 본 계획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소문리, 옥산리 일원에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계획 비교, 수요·공급, 입지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검토하였음

가)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 계획 시행에 따른 개발로 체계적인 관리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며,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나)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 검토

- 대안1은 계획지구 북측의 경남진주혁신도시와 도로 연결을 통한 기능 간 연계가 가능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상업시설, 업무지원시설)의 집적 배치로 생활 편의 기능 효율 극대화 및 문산IC 인근에 도시지원시설(자족시설), 완충녹지 배치로 소음 영향 저감이 가능하며, 수변축(영천강, 문산천)을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태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함에 따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함
- 대안2는 영천강과 문산천에 교량 계획으로 분리된 지구간 연결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흐름의 기대가 가능하고, 주거용지 확보 최대화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으나, 대안1에 비해 문산IC인근 주거시설 입지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는데 불리하고, 도시지원시설(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산배치로 생활 편의 기능 효율 저하의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대안1을 선정함

다) 입지에 대한 대안 검토

- 대안1은 하천 및 도로를 경계로 하여 지구계를 정형화하고, 산지부 포함을 최소화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 및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여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함
- 대안2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지구계를 정형화하고, 대안1에 비해 산지부 포함 면적이 넓어 가용 부지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지지형으로 인해 경사면 증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산지부 포함 면적이 적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대안1을 선정함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선정은 금회 계획의 목적 및 특성, 환경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 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 여부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 비교”, “수요·공급”, “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생태계 변화 및 서식지 훼손 등에 따른 영향 • 육상 및 육수생태계의 서식현황 변화,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파악 및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태축 변화 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 조망점,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투입인원으로 오수발생 등에 의한 영향예상 수계 • 운영 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대기질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 공사 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의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에 의한 운영 시 에너지사용,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대기질 영향 등
			악취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 분석
			토양	• 계획시행으로 공사 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 영향
			소음· 진동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의한 건설장비 가동,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영향 등
			일조 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 환경배출시설 연계하여 적정성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 발생에 따른 영향
	사회·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인구 및 주거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2) 환경영향평가

〈표 2-8〉 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3	3	6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공사 및 운영 시 동·식물상(보호대상 동·식물 등) 영향예측 및 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환경	기상	-	○	-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공사 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 시 차량 및 시설 등 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 분석
	온실가스	-	-	○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
수환경	수질	○	-	-	• 공사 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 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적정처리 대책 • 수질오염총량 협의
	수리·수문	○	-	-	•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위치·규모 등에 관한 대안 검토·선정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양	○	-	-	•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파악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깎기·쌓기 및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적법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 시 공사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 시 주변 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위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경관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송전탑 등 전파장해 유발 시설물 미입지로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주거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산업 영향 미미

3) 기후변화영향평가

〈표 2-9〉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비고
	평가항목	제외항목	사유	
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
2)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

〈표 2-10〉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비고
	평가항목	제외항목	사유	
1) 온실가스 감축				
가.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		○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전략·방안 수립	
2) 기후위기 적응				
가.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
나.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
다.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		○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 및 방안 수립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계획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입지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조사내용 ◦ 육상식물상 현황 -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 육상동물상 현황 -분류군별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현황 -분류군별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로부터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횡수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이내 × 2회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식물상, 육수생물, 양서·파충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 예측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식물상, 육수생물, 양서·파충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 지형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 계획지구

〈표 2-1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 변화 정도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①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지표수 8개 지점 × 2회 ◦ 지하수 3개 지점 × 2회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 수질오염총량 검토 ◦ 운영 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 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영천강, 문산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의 부 합 성	기상	◦ 기상연보 ◦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누적 평가 고려) ◦ AERMOD 등 확산 모델 이용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악취	◦ 악취 현황조사를 통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영향예측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표 2-1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의 부 합 성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토양 3개 지점 × 2회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소음 · 진동	①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고층건물은 층수확인)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소음·진동 : 6지점 × 2회	◦ 공사 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검토 ◦ 운영 시 통행차량에 인한 소음 영향 검토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일조 장해	①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영향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오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표 2-1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 원 에 너 지 순 환 의 효 율 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 회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 계획지구
		인구· 주거	①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 환경영향평가

〈표 2-1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①조사내용 ◦ 육상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 육상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현황 - 분류군별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로부터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이내 × 2회 -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 식물상, 육수생물, 양서·파충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포유류, 조류 : 300m 이내 - 식물상, 육수생물, 양서·파충류, 곤충류 : 100m 이내 (문헌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자연환경 자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검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 기상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인근 기상대) ③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④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기상연보 ◦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표 2-12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대기환경	대기질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 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대기질 8개 지점 × 2회(3일)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누적 평가 고려) ◦ AERMOD 등 확산 모델 이용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악취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 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악취 3개 지점 × 2회	◦ 악취 현황조사를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영향예측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수환경	수질	①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지표수 8개 지점 × 2회 ◦ 지하수 3개 지점 × 2회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 수질오염총량 검토 ◦ 운영 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 계획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영천강, 문산천)
	수리·수문	①조사내용 ◦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영천강, 문산천) ③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운영 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영천강, 문산천)
토지환경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 사업지구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및 횟수 ◦ 토양 3개 지점 × 2회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검토	◦ 사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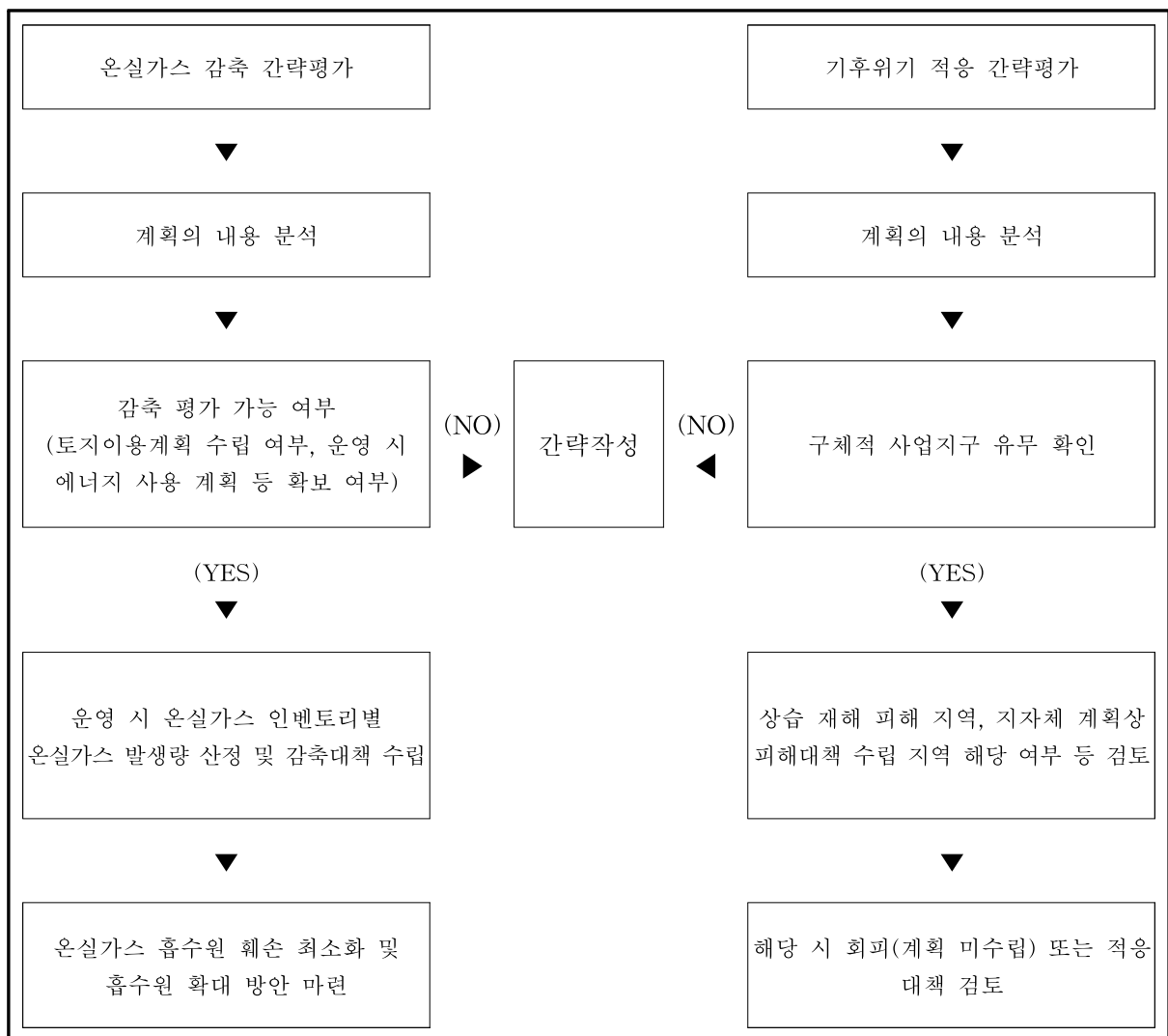
〈표 2-12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방법 및 범위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토지환경	지형 · 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 지형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사면안정성 등	◦ 사업지구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방안 ◦ 폐기물 처리 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 및 에너지 순환성 검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 진동	①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고층 건물은 층수확인)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소음·진동 : 6지점 × 2회	◦ 공사 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 시 차량운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경관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의 변화 ◦ 조망점별 경관시물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조장해	①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입지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 영향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 경제환경	인구· 주거	①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3)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175호, 2023.07.25., 환경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3, 환경부」를 참조하여 설정함
- 본 계획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써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되기 전 단계이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작성시 본 계획의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3, 환경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평가에 대해 간략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그림 2-3)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간략평가 가능 여부 판단기준

〈표 2-1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평가시점	계획지구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공사시	계획지구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
	운영시			
2)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평가시점	계획지구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현재 기후 (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균)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영향 전망 시점	계획지구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

〈표 2-14〉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온실 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평가 시점	사업대상지	○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사 시	사업대상지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산정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인구·세대수 등 활용	-
		운영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공사 시	사업대상지	○ 온실가스 감축 전략·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적용, 에너지 자립률 향상, 탄소 흡수원 확대 방안 등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
		운영 시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현재 기후 (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균)	사업대상지	○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 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30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
		미래 10~20년			
		미래 30년 이후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현재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영향 전망 시점	사업대상지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 평가요인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 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및 우선적 관리 필요 리스크 도출	-
	기후위기 취약성 · 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	사업대상지	○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수립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

2.2.4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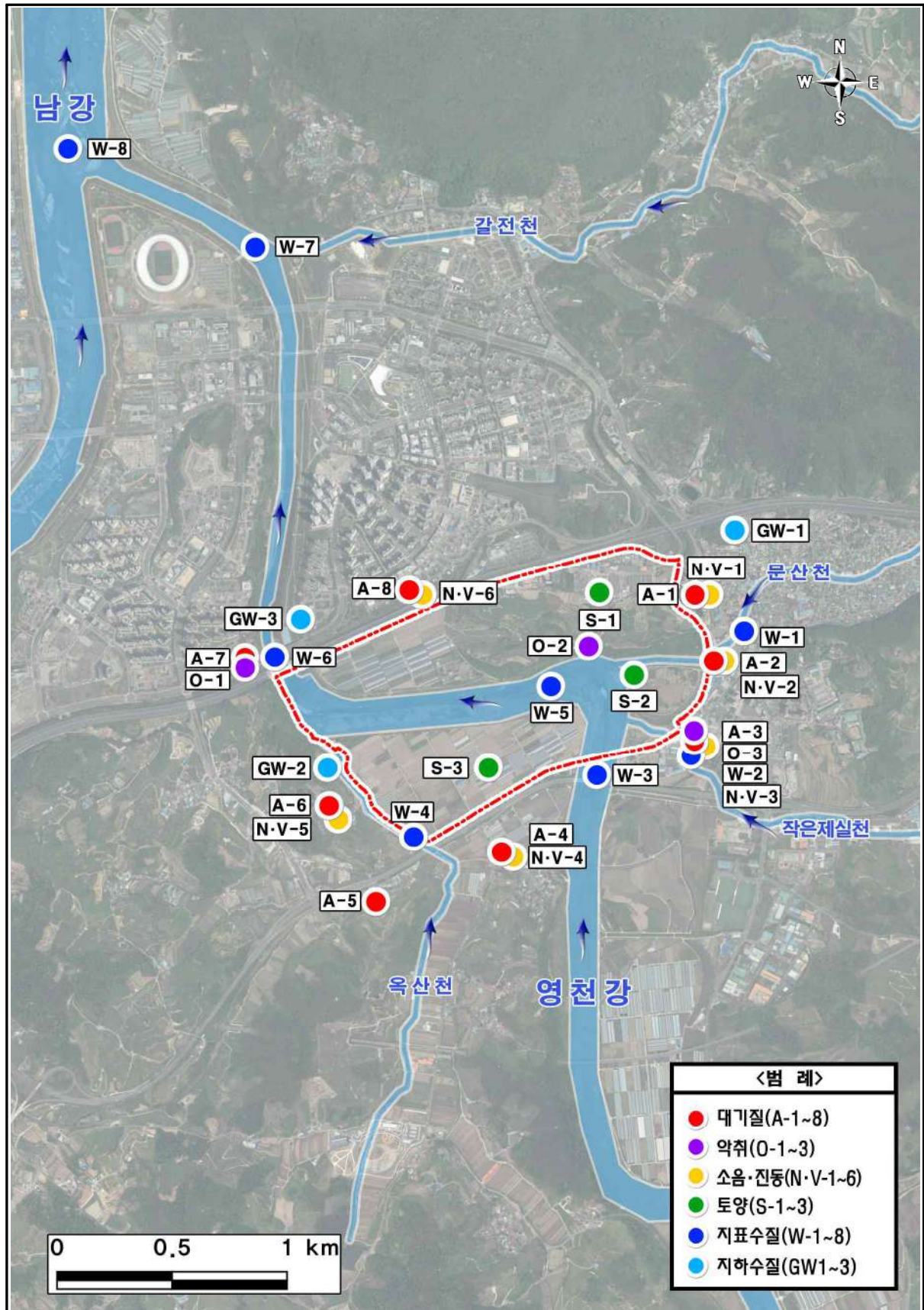
○ 환경질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 현황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15〉 환경질 조사항목(계획)

구 분	세부 조사항목	항목		지점		횟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대기질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3일 측정)	8	8	8	8	2	2
악취	○ 복합악취	1	1	3	3	2	2
지표수질	○ 유량, pH, BOD, SS, DO, TOC, T-N, T-P,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18	18	8	8	2	2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 ⁶⁺ , NH ₃ -N, NO ₃ -N, Cd, Al, 페놀, KMnO ₄ 소비량, 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Cl ⁻), 중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25	25	3	3	2	2
토양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Cr ⁶⁺ ,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22	22	3	3	2	2
소음·진동	○ 소음도, 진동레벨	-	-	6	6	2	2

〈표 2-16〉 환경질 현황 조사지점(계획)

구 분			조사지점	조사위치	비 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 환경 영향 평가	대 기 질		A-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421	주거지(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A-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611-116	주거지(문산한양하이빌)
			A-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48-3	종교시설(하늘풍경교회)
			A-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71-1	주거지(신촌마을)
			A-5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86-13	주거지
			A-6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746-1	주거지
			A-7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157-7	주거지
			A-8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24-15	주거지
	약취		O-1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157-7	주거지
			O-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859-3	주거지
			O-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48-3	종교시설(하늘풍경교회)
	수 질	지표	W-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370-111	문산교 상류부
			W-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45-4	사업지구 상류부
			W-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21	옥산교 상류부
			W-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750-11	사업지구 상류부
			W-5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3	문산천 합류후
			W-6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4-11	영천교 하류부
			W-7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671-45	속사교 하류부
			W-8	경남 진주시 하대동 31-1	남강 합류부
		지하	GW-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303	농업용수
			GW-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881-36	농업용수
			GW-3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4-6	생활용수
	토 양		S-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666	공장
			S-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833-7	답
			S-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04	답
	소 · 진 · 동		N·V-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421	주거지(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N·V-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611-116	주거지(문산한양하이빌)
			N·V-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48-3	종교시설(하늘풍경교회)
			N·V-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71-1	주거지(신촌마을)
			N·V-5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746-1	주거지
			N·V-6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24-15	주거지



(그림 2-4) 환경질 현황조사계획도(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이며,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표 2-17〉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u>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u>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u>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u>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u> 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표 2-1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u>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문공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람·공고 사실의 게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

(1) 신문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진주시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 주민의견 제출서

〈표 2-1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명회의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임

〈표 2-20〉 설명회의 개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청회의 개최

-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2-21〉 공청회의 개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u>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u>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u> 2. 제14조에 따라 <u>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u>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u>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u>하여야 한다. 1. <u>개발기본계획의 개요</u> 2. <u>공청회 일시 및 장소</u> 3. <u>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표 2-22〉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u>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1. <u>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u> 2. <u>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u>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u>설명회를 생략한 경우:</u>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u>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u> 나. <u>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u> 2. <u>공청회를 생략한 경우:</u> <u>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u>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할 계획임

<표 2-2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u> 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u>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u>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u> 해야 한다.

바)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 또는 최소지역범위 이상 증가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겠음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제10장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제시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표 2-24〉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관 련 법	내 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u>「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이며,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표 2-25〉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u>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u>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u> 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u>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가.’~‘라.’에 상세 제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마’에 상세 제시)할 계획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진주시장)

〈표 2-26〉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u>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u>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u>군수·구청장</u>(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중간 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u>공개</u>하여야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문공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람·공고 사실의 게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

(1)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진주시)의 정보통신망(<https://www.jinju.go.kr>)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 : 진주시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 주민의견 제출서

〈표 2-2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u>하고, <u>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u>에서 환경영향평가 <u>대상지역의 주민</u>(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u> 하여야 한다. 1. <u>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u>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u>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u>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u>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u>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u>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u>하여야 하며, <u>공람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u>하여야 한다.

나) 설명회의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임

〈표 2-28〉 설명회 개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 (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u>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u>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u>하여야 한다. 다만, <u>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u>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u>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u>하여야 한다. 다만, <u>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 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다) 공청회의 개최

-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2-29〉 공청회 개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u>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u>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u> 2. 제38조에 따라 <u>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u>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u>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u>하여야 한다. 1. <u>사업의 개요</u> 2. <u>공청회 일시 및 장소</u> 3. <u>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진주시)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표 2-30〉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u>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를 말한다. 1. <u>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u> 2. <u>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u>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u>설명회를 생략</u>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u>일간신문과 지역신문</u>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u>각각 1회 이상 공고</u> 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u>공청회를 생략</u>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u>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u>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u>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u>하여야 한다.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진주시) 또는 승인기관 장(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할 계획임

〈표 2-3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u>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u>해야 한다.

바)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 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하겠음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표 2-3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관 련 법	내 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 <u>환경영향평가법</u>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u>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